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이 노후. 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설치기준이 1/2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활용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8조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문 신설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③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제12조의5 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부설주차장 제18조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설>	제4장부설주차장 제18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